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주요
개정사항

| 페이지 (24년 지침 페이지 기준) | 2024년 | 2025년 |
|---------------------------|--|--|
| 11 | (신설) |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유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3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권장 |
| 18 | (신설) | ※ 1분기 정기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3월에 실시해야 함 |
| 23(상단)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 개별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가장 높은 운영체로 결정(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
| 23 (하단)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 개별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재위탁 결정(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
| 54 | (신설) | * 유효폭 : 그림과 같이 비상구 문이 열렸을 시 보행자가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함 |
| 65 | 모든 하위연령 반편성시 1반에 1명에 한하며, 발달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령혼합, 탄력편성 등 탄력보육 금지 | 모든 하위연령 반편성시 1반에 1명에 한한다. |
| 66 | 신학기(3~5월) 아동 퇴소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아동 퇴소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 67 |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보조교사(정부 지원 보조교사는 미인정)를 배치 |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보조교사(정부 지원 보조교사 포함)를 배치 |
| 73 | (신설)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

| 페이지 (24년 지침 페이지 기준) | 2024년 | 2025년 |
|---------------------------|--|---|
| | | 운영하고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 간 우선 입소권 협의 가능 |
| 75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 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 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등을 안내해야 함 |
| 75 | ※ 아동이 0, 1세(0~23개월)인 경우 부모 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호자에게 적극 홍보·안내해야 함 | ※ 아동이 0, 1세(0~23개월)인 경우 부모 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호자에게 적극 안내해야 함 |
| 87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 국공립 1호봉 이상 지급을 권고('22.3~) | (삭제) |
| 96 | -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지출해야 함 ※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관리운영비로 추가수납은 불인정 | (삭제) |
| 152 | (신설) | 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내용 본문 참고) |
| 153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결격사유 확인) |
| 161 |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인 이상이고 평가제 평가결과 A, B 등급 어린이집 |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인 이상이고 영유아 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
| 161 | 「영유아보육법」 제30조<법률 제15892호>에 따라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A등급 또는 B등급인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법률 제19898호>에 따라 평가완료된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 |

| 페이지 (24년 지침 페이지 기준) | 2024년 | 2025년 |
|---------------------------|--|--|
| 161 |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에 보육실습 실시 |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아 평가결과(평가등급)가 유효한 어린이집은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해당함 |
| 161 | ※ 종전 보육실습 규정: 2017. 1. 1. 이후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단, 2018. 1. 1. 이후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 2017. 3. 1. 이후 보육실습 교과목 이수자부터 해당함) | ※ 종전 보육실습 규정: 2017. 1. 1. 이후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제 평가결과 A, B 등급 또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단, 2018. 1. 1. 이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 2017. 3. 1. 이후 보육실습 교과목 이수자부터 해당함) |
| 161 | 어린이집 평가결과 확인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내 “어린이집>어린이집 찾기” 또는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내 “통합정보공시 > 어린이집·유치원 찾기>어린이집 검색”을 통해 확인 | ※ 어린이집 평가결과 확인방법: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 홈페이지(www.childinfo.go.kr) 내 “검색으로 찾기 > 검색하기” 또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내 “어린이집>어린이집 찾기”를 통해 확인 |
| 177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단, 등록기준지, 신체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 194 | * 다만, 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단축근무 및 야간연장 보육교사로 6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 | 야간연장 보육교사로 6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 |
| 194 | (신설) | 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단축근무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 보육교직원과 동일하게 인정(‘25.1.1.~) ※ 인건비 지원 대상 교사는 호봉을 재확정한 당해 월부터 재확정된 호봉으로 인건비 지원 |



| 페이지 (24년 지침 페이지 기준) | 2024년 | 2025년 | | | | | | | | | | | | | | | | | | | | |
|---------------------------|---|--|------------|-------|--------|-------|---------|--------|---------|---------|---|--|------------|------------|--------|--------|---------|--------|----------|--------|---------|---|
| 204 | ※ 단,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25년 2월까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공공형 및 지자체 특수시책(서울시 자체 설치 국공립 등)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미포함) | ※ 단, 정원 21~39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26년 2월까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공공형 및 지자체 특수시책(서울시 자체 설치 국공립 등)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미포함) | | | | | | | | | | | | | | | | | | | | |
| 205 | 나. 교직원의 겸임제한 | 나. 보육교직원의 겸임·겸직 (상세내용 본문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221 |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되, 집합교육 미개설의 사유로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이수 가능 ('19년 온라인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관할 지자체에 집합교육 개설여부 사전확인 필수) |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반드시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함 - 다만 집합교육 미개설 등의 사유로 집합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 이수 가능 * '19년 온라인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관할 지자체에 집합교육 개설여부 사전확인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256~280 | VI. 어린이집 평가 전면개정 | VI. 어린이집 평가 전면개정 | | | | | | | | | | | | | | | | | | | | |
| 285 | 단, 어린이집 별 누리과정 2개반 (장애아동의 경우 8개반) 이하인 경우 '보조교사 인건비 우선 활용' 미적용 | 단, 어린이집 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 아동 54명(장애아동의 경우 26명) 이하인 경우 '보조교사 인건비 우선 활용' 미적용 | | | | | | | | | | | | | | | | | | | | |
| 286 | <table border="1"> <thead> <tr> <th>누리과정(일반아동)</th> <th>누리과정(장애아동)</th> </tr> </thead> <tbody> <tr> <td>3-4개반</td> <td>9-14개반</td> </tr> <tr> <td>5-7개반</td> <td>15-20개반</td> </tr> <tr> <td>8-10개반</td> <td>21개반 이상</td> </tr> <tr> <td>11개반 이상</td> <td>-</td> </tr> </tbody> </table> <p>※ 반 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 아동이 1명 이상 포함된 반수</p> | 누리과정(일반아동) | 누리과정(장애아동) | 3-4개반 | 9-14개반 | 5-7개반 | 15-20개반 | 8-10개반 | 21개반 이상 | 11개반 이상 | - | <table border="1"> <thead> <tr> <th>누리과정(일반아동)</th> <th>누리과정(장애아동)</th> </tr> </thead> <tbody> <tr> <td>55-73명</td> <td>27-42명</td> </tr> <tr> <td>74-128명</td> <td>43-60명</td> </tr> <tr> <td>129-183명</td> <td>61명 이상</td> </tr> <tr> <td>184명 이상</td> <td>-</td> </tr> </tbody> </table> <p>※ 현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 아동 수 ※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현원 책정은 매년 3.1., 6.1., 9.1., 12.1. 실시</p> | 누리과정(일반아동) | 누리과정(장애아동) | 55-73명 | 27-42명 | 74-128명 | 43-60명 | 129-183명 | 61명 이상 | 184명 이상 | - |
| 누리과정(일반아동) | 누리과정(장애아동) | | | | | | | | | | | | | | | | | | | | | |
| 3-4개반 | 9-14개반 | | | | | | | | | | | | | | | | | | | | | |
| 5-7개반 | 15-20개반 | | | | | | | | | | | | | | | | | | | | | |
| 8-10개반 | 21개반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11개반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누리과정(일반아동) | 누리과정(장애아동) | | | | | | | | | | | | | | | | | | | | | |
| 55-73명 | 27-42명 | | | | | | | | | | | | | | | | | | | | | |
| 74-128명 | 43-60명 | | | | | | | | | | | | | | | | | | | | | |
| 129-183명 | 61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184명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페이지 (24년 지침 페이지 기준) | 2024년 | 2025년 |
|---------------------------|---|---|
| 286 | (원칙) 1일 4시간 이상, 오후근무 권장, 월 보수 1,068천원(4시간 기준)* 이상 | (원칙) 1일 4시간 이상, 오후근무 권장, 월 보수 1,100천원(4시간 기준)* 이상 |
| 329 | (신설) | 신용문제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일 경우, 11개 금융기관을 통해 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하면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 |
| 330 4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 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 까지 모두 출석을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퇴소 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 아동) 입소월에 1일 이상 출석한 경우,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퇴소 아동) 퇴소월에 1일 이상 출석한 경우,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 332 | 최대 30일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통보시까지 60일로 완화) | 최대 30일 |
| 332 | 年 누적일수 최대 30일(한시적으로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年 누적일수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357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 361 | (신설) | 보호자가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 |
| 368 | (신설)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3.3.1.일 개정 이전 보육사업안내 규정에 따라, 상반기 출생자는 6.30일, 하반기 출생자는 12.31일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 369 | 2024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 2025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



PART

주요
개정사항

| 페이지 (24년 지침 페이지 기준) | 2024년 | 2025년 | | | | | | | | | | | | | | | | |
|---------------------------|--|--|-----------|-------|---|-------|-----------|-----------|-----------|--|-------|-------|-------|---|-------|-----------|-----------|-----------|
| 375 | ※ 코로나 특례(인건비 지원을 위한 정원충족률) 종료에 따라 '24년에 한해 유아반 최소 기준 완화(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하여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 코로나 특례(인건비 지원을 위한 정원충족률) 종료에 따라 '25년에 한해 유아반 최소 기준 완화(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하여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 | | | | | | | | | | | | | | |
| 379 387 390 | 장애아 전담교사 1인당 월 1,790천원 지원 | 장애아 전담교사 1인당 월 1,844천원 지원 | | | | | | | | | | | | | | | | |
| 393 |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함 | (삭제) | | | | | | | | | | | | | | | | |
| 398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table border="1"> <thead> <tr> <th>근무 시간</th> <th>6~6.5</th> <th>7~7.5</th> <th>8</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단가</td> <td>1,773,000</td> <td>2,068,000</td> <td>2,364,000</td> </tr> </tbody> </table> | 근무 시간 | 6~6.5 | 7~7.5 | 8 | 지원 단가 | 1,773,000 | 2,068,000 | 2,364,000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table border="1"> <thead> <tr> <th>근무 시간</th> <th>6~6.5</th> <th>7~7.5</th> <th>8</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단가</td> <td>1,826,000</td> <td>2,130,000</td> <td>2,435,000</td> </tr> </tbody> </table> | 근무 시간 | 6~6.5 | 7~7.5 | 8 | 지원 단가 | 1,826,000 | 2,130,000 | 2,435,000 |
| 근무 시간 | 6~6.5 | 7~7.5 | 8 | | | | | | | | | | | | | | | |
| 지원 단가 | 1,773,000 | 2,068,000 | 2,364,000 | | | | | | | | | | | | | | | |
| 근무 시간 | 6~6.5 | 7~7.5 | 8 | | | | | | | | | | | | | | | |
| 지원 단가 | 1,826,000 | 2,130,000 | 2,435,000 | | | | | | | | | | | | | | | |
| 399 | - 야간연장반 별 월 487,000원 지원 | - 야간연장반 별 월 501,000원 지원 | | | | | | | | | | | | | | | | |
| 403 | ① 야간연장 보육교사 <table border="1"> <thead> <tr> <th>근무 시간</th> <th>6~6.5</th> <th>7~7.5</th> <th>8</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단가</td> <td>1,773,000</td> <td>2,068,000</td> <td>2,364,000</td> </tr> </tbody> </table> ② 새벽근무 보육교사 : 1인당 2,068,000원 (월) 지원 | 근무 시간 | 6~6.5 | 7~7.5 | 8 | 지원 단가 | 1,773,000 | 2,068,000 | 2,364,000 | ① 야간연장 보육교사 <table border="1"> <thead> <tr> <th>근무 시간</th> <th>6~6.5</th> <th>7~7.5</th> <th>8</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단가</td> <td>1,826,000</td> <td>2,130,000</td> <td>2,435,000</td> </tr> </tbody> </table> ② 새벽근무 보육교사 : 1인당 2,130,000원 (월) 지원 | 근무 시간 | 6~6.5 | 7~7.5 | 8 | 지원 단가 | 1,826,000 | 2,130,000 | 2,435,000 |
| 근무 시간 | 6~6.5 | 7~7.5 | 8 | | | | | | | | | | | | | | | |
| 지원 단가 | 1,773,000 | 2,068,000 | 2,364,000 | | | | | | | | | | | | | | | |
| 근무 시간 | 6~6.5 | 7~7.5 | 8 | | | | | | | | | | | | | | | |
| 지원 단가 | 1,826,000 | 2,130,000 | 2,435,000 | | | | | | | | | | | | | | | |
| 406 | 휴일 근무수당 일일 58,000원 지원 | 휴일 근무수당 일일 60,000원 지원 | | | | | | | | | | | | | | | | |
| 407 | 토요근무수당 일 58,000원 지원 | 토요근무수당 일 60,000원 지원 | | | | | | | | | | | | | | | | |
| 407 | 지원대상 : 토요일에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지원대상 : 주6일 운영을 통해 토요일에 지속적으로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토요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대상 제외 | | | | | | | | | | | | | | | | |

| 페이지 (24년 지침 페이지 기준) | 2024년 | 2025년 |
|---------------------------|--------------------------------|---|
| 416 | (신설) | <p>반 편성 원칙을 위반하여 상·하위연령 반 편성하거나, 아동의 월중 퇴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연령만으로 연령혼합반을 편성하는 등, 반 정원을 변칙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신청월 인센티브 미지원</p> <p>※ 어린이집 반 편성 원칙은 Ⅱ.어린이집의 운영 - 1. 어린이집 운영 일반 원칙 등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참고</p> <p>※ 각 신청 건에 대한 미지원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지자체 판단에 따름</p> |
| 418 | (신설) | <p>단,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소재 어린이집인 경우, 0세반에 한해 최대 2개 반까지 인센티브 지원</p> <p>* 향후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가 개정될 경우, 변경된 지역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은 개정 시행 다음 해 1월 1일 (지급은 2월부터 적용)</p> <p>* 금액 생성 및 소급 지원 시, 인센티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인구감소지역 기준 적용</p> |
| 418 | (신설) | <p>인센티브 신청 기간동안 반 편성을 변경할 경우, 기존 생성내역이 변경되어 인센티브가 미지급될 수 있음에 유의할 것</p> |
| 457 | (지원단가) 월 2,401천원, '24년 1월부터 적용 | (지원단가) 월 2,473천원, '25년 1월부터 적용 |
| 457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2,061천원/인 | 대체교사 및 관리자 급여: 월 2,123천원/인 |
| 459 | 지원단가: 일 93,690원(8시간 기준) | 지원단가: 일 96,500원(8시간 기준) |
| 460 | 지원단가: 월 2,294천원 | 지원단가: 월 2,363천원 |
| 460 | 월 2,325천원(국공립 7호봉) 지급 가능 | 월 2,395천원(국공립 7호봉) 지급 가능 |



| 페이지 (24년 지침 페이지 기준) | 2024년 | 2025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3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068천원* 지원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100천원*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7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1,068천원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 근무 기준, 월 1,100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4 | 돌봄대상: 2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단 농업인 자녀 필수 포함) 운영기간: 4~8개월(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시기 및 기간결정) 종사자 최대 근무시간: 시설장(5시간), 돌보미(10시간), 취사원(5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대근무, 대체근무, 겸임근무 등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운영 | 돌봄대상: 2세에서 초등학교 4학년(단 농업인 자녀 필수 포함) 운영기간: 4~10개월(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시기 및 기간결정) 종사자 최대 근무시간: 시설장(10시간), 돌보미(10시간), 취사원(5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대근무, 대체근무, 겸임근무 등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조정·운영 ※ 단, 시설장은 돌보미 겸임시에만 10시간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5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시설장</th> <th>돌보미</th> <th>취사원</th> </tr> </thead> <tbody> <tr> <td>영유아 10인 미만</td> <td>1명</td> <td>1명</td> <td>1명</td> </tr> <tr> <td>영유아 10인 이상~15인 미만</td> <td>1명</td> <td>1~2명</td> <td>1명</td> </tr> <tr> <td>영유아 15인 초과</td> <td>1명</td> <td>2명</td> <td>1명</td> </tr> </tbody> </table> | 구분 | 시설장 | 돌보미 | 취사원 | 영유아 10인 미만 | 1명 | 1명 | 1명 | 영유아 10인 이상~15인 미만 | 1명 | 1~2명 | 1명 | 영유아 15인 초과 | 1명 | 2명 | 1명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시설장</th> <th>돌보미</th> <th>취사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유아·아동 10인 미만</td> <td>아동 3인 이하 혼합반 운영</td> <td rowspan="2">1명</td> <td rowspan="2">1명</td> </tr> <tr> <td>아동 4인 이상 혼합반 불가 (시설장: 돌보미 겸임 가능)</td> </tr> <tr> <td rowspan="2">유아·아동 10인 이상</td> <td>아동 3인 이하 혼합반 운영</td> <td rowspan="2">1명</td> <td rowspan="2">2명</td> </tr> <tr> <td>아동 4인 이상 혼합반 불가 (시설장: 돌보미 겸임 가능)</td> </tr> </tbody> </table> | 구분 | 시설장 | 돌보미 | 취사원 | 유아·아동 10인 미만 | 아동 3인 이하 혼합반 운영 | 1명 | 1명 | 아동 4인 이상 혼합반 불가 (시설장: 돌보미 겸임 가능) | 유아·아동 10인 이상 | 아동 3인 이하 혼합반 운영 | 1명 | 2명 | 아동 4인 이상 혼합반 불가 (시설장: 돌보미 겸임 가능) |
| 구분 | 시설장 | 돌보미 | 취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유아 10인 미만 | 1명 | 1명 |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유아 10인 이상~15인 미만 | 1명 | 1~2명 |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유아 15인 초과 | 1명 | 2명 |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시설장 | 돌보미 | 취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아·아동 10인 미만 | 아동 3인 이하 혼합반 운영 | 1명 | 1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 4인 이상 혼합반 불가 (시설장: 돌보미 겸임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아·아동 10인 이상 | 아동 3인 이하 혼합반 운영 | 1명 | 2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동 4인 이상 혼합반 불가 (시설장: 돌보미 겸임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6 | 운영기간별 시설당 최대 지원액 표 | 개정사항 반영하여 표 수정(본문 참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9 | (신설) | 임면보고 첨부 서류 추가 기재(본문 참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1 | 대체교사 관리자 기준 변경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변경 후 추가 사항 규정 (본문 참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